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54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김선교 · 최수진 · 구자근
김성원 · 김상훈 · 김대식
박준태 · 김미애 · 윤상현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3년으로”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5. ~ 7. (생략)
- ② ~ ⑥ (생략)

-----.

- 5. ~ 7.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